

##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공고

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등을 위반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  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자)			경력(자격)종목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주소지			
황애현	'80.08.23.	서울	조경기사	자격취소	국가기술 자격증 대여

### 2. 법적근거

-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[별표 18] 등

### 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(송달일)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## **4. 기타방법**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(02-2110-6728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